##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유상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4

발의연월일: 2024. 6. 7.

발 의 자:유상범・박충권・조정훈

정점식・구자근・조배숙

이철규 · 박형수 · 임종득

배준영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'강원특별법'이라 함)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 도(道)는 전국 최초로 '산림이용진흥지구'를 지정·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음.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2%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산림 관련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임.

산림이용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법은 「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」,「자연공원법」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 나, 도내 산림 절반 이상(58%)을 차지하는 국유림에 부과된 규제를 풀지 못하여 각종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.

이에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

해 종류 재구분 및 처분(매각 또는 교환), 사용허가를 가능토록 하여,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이 루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 16조제4항제12호,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13호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4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2. 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5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제20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3. 제16조제4항제12호에 해당되어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된 경우로서 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」 제3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

제21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6조의 산림이용진흥지구개발계획에 따른 산림이용진흥 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국유림의 구분) ① ~ ③	제16조(국유림의 구분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	4
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	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
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	
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	
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	
할 수 있다.	
1. ~ 11. (생 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12. 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
	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
	위한 특별법」 제35조에 따
	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
	<u>된 경우</u>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	제20조(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
교환) ①산림청장은 준보전국	교환) ①
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	
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. 다	
만,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	
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	
있다.	

1. ~ 2의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3.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제21조(국유림의 대부등) ①산림 저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. 다만,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있다.

1. ~ 12. (생 략) <신 설>

	1.	$\sim$	2의3.	(현행과	같음)
--	----	--------	------	------	-----

- 3. 제16조제4항제12호에 해당 되어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 분된 경우로서 「강원특별자 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 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」 제38조에 따른 사업시 행자에게 매각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
-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국유림의	대부등) ①

- 1. ~ 12. (현행과 같음)
- 13. 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6조의 산 림이용진흥지구개발계획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으로

	사용하려는 경우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